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S1BL)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경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7.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26.01.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3년	적용	공공택지, 공공주택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7.09.(목)	2026.07.20.(월)	2026.07.21.(화)	2026.07.22.(수)	2026.07.29.(수)	2026.07.30.(목)~ 2026.08.02.(일)	2026.08.10.(월)~ 2026.08.12.(수)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과 -16958호(2026.07.0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 공공주택지구 S1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512세대 중 일반분양 361세대
[특별공급 156세대(기관추천 21세대, 다자녀가구 36세대, 신혼부부 32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36세대, 신생아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주택건설형 공모로 공급된 사업으로, 총 512세대 중 151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
(72A : 34세대 / 84A : 94세대 / 84B : 23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 000310	01	072.4726A	72A	72.4726	24.0828	96.5554	46.8585	143.4139	44.0887	48	7	5	7	1	8	5	33	15	2
	02	084.4746A	84A	84.4746	26.9469	111.4215	54.6185	166.0400	51.3901	133	11	13	20	4	23	13	84	49	1
	03	084.7614B	84B	84.7614	27.5427	112.3041	54.8040	167.1081	51.5646	33	3	3	5	1	5	3	20	13	-
	04	095.2508A	95A	95.2508	29.8514	125.1022	61.5861	186.6883	57.9425	137	-	15	-	4	-	-	19	118	1
	05	095.3102B	95B	95.3102	30.0353	125.3455	61.6245	187.9700	57.9819	10	-	-	-	-	-	-	-	10	-
	합 계									361	21	36	32	10	36	21	156	205	-

※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동별 라인별	층 구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 시	1차(10%) 2026.11.30	2차(10%) 2027.02.26	3차(10%) 2027.06.30	4차(10%) 2027.10.29	5차(10%) 2028.01.31	6차(10%) 2028.06.30	입주지정일
072. 4726A	102동 103동 105동	1층	2	199,204,000	336,196,000	-	535,40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160,620,000
		2층	1	199,204,000	341,696,000	-	540,90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162,270,000
		3층	1	199,204,000	347,196,000	-	546,40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54,640,000	163,920,000
		4층~10층	12	199,204,000	352,696,000	-	551,90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55,190,000	165,570,000
		11층~15층	9	199,204,000	358,196,000	-	557,40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55,740,000	167,220,000
		16층~20층	8	199,204,000	363,796,000	-	563,0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21층~25층	7	199,204,000	371,996,000	-	571,20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171,360,000
		26층~27층	4	199,204,000	380,296,000	-	579,500,000	57,950,000	57,950,000	57,950,000	57,950,000	57,950,000	57,950,000	57,950,000	173,850,000
		28층~29층	4	199,204,000	385,796,000	-	585,0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75,500,000
084. 4746A	101동 102동 104동 105동	1층	1	232,194,000	373,506,000	-	605,700,000	60,570,000	60,570,000	60,570,000	60,570,000	60,570,000	60,570,000	60,570,000	181,710,000
		2층	4	232,194,000	379,706,000	-	611,900,000	61,190,000	61,190,000	61,190,000	61,190,000	61,190,000	61,190,000	61,190,000	183,570,000
		3층	6	232,194,000	386,006,000	-	618,20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185,460,000
		4층~10층	43	232,194,000	392,206,000	-	624,400,000	62,440,000	62,440,000	62,440,000	62,440,000	62,440,000	62,440,000	62,440,000	187,320,000
		11층~15층	30	232,194,000	398,406,000	-	630,60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63,060,000	189,180,000
		16층~20층	28	232,194,000	404,706,000	-	636,900,000	63,690,000	63,690,000	63,690,000	63,690,000	63,690,000	63,690,000	63,690,000	191,070,000
		21층~25층	16	232,194,000	414,106,000	-	646,30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64,630,000	193,890,000
		26층~27층	2	232,194,000	423,406,000	-	655,600,000	65,560,000	65,560,000	65,560,000	65,560,000	65,560,000	65,560,000	65,560,000	196,680,000
		28층~29층	3	232,194,000	429,706,000	-	661,900,000	66,190,000	66,190,000	66,190,000	66,190,000	66,190,000	66,190,000	66,190,000	198,570,000
084. 7614B	102동 103동	4층~10층	10	232,983,000	402,617,000	-	635,600,000	63,560,000	63,560,000	63,560,000	63,560,000	63,560,000	63,560,000	63,560,000	190,680,000
		11층~15층	6	232,983,000	408,917,000	-	641,900,000	64,190,000	64,190,000	64,190,000	64,190,000	64,190,000	64,190,000	64,190,000	192,570,000
		16층~20층	7	232,983,000	415,317,000	-	648,30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194,490,000
		21층~25층	7	232,983,000	424,817,000	-	657,80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65,780,000	197,340,000
		26층~27층	2	232,983,000	434,417,000	-	667,400,000	66,740,000	66,740,000	66,740,000	66,740,000	66,740,000	66,740,000	66,740,000	200,220,000
		28층~29층	1	232,983,000	440,717,000	-	673,700,000	67,370,000	67,370,000	67,370,000	67,370,000	67,370,000	67,370,000	67,370,000	202,110,000
095. 2508A	103동 104동 105동	1층	1	261,815,026	355,440,886	35,544,088	652,800,000	65,280,000	65,280,000	65,280,000	65,280,000	65,280,000	65,280,000	65,280,000	195,840,000
		2층	5	261,815,026	361,531,795	36,153,179	659,500,000	65,950,000	65,950,000	65,950,000	65,950,000	65,950,000	65,950,000	65,950,000	197,850,000
		3층	5	261,815,026	367,622,704	36,762,270	666,200,000	66,620,000	66,620,000	66,620,000	66,620,000	66,620,000	66,620,000	66,620,000	199,860,000
		4층~10층	35	261,815,026	373,804,522	37,380,452	673,0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201,900,000
		11층~15층	25	261,815,026	379,895,431	37,989,543	679,700,000	67,970,000	67,970,000	67,970,000	67,970,000	67,970,000	67,970,000	67,970,000	203,910,000
		16층~20층	25	261,815,026	385,986,340	38,598,634	686,40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68,640,000	205,920,000
		21층~25층	25	261,815,026	395,168,159	39,516,815	696,500,000	69,650,000	69,650,000	69,650,000	69,650,000	69,650,000	69,650,000	69,650,000	208,950,000
		26층~27층	8	261,815,026	404,349,977	40,434,997	706,600,000	70,660,000	70,660,000	70,660,000	70,660,000	70,660,000	70,660,000	70,660,000	211,980,000
		28층~29층	8	261,815,026	410,440,886	41,044,088	713,300,000	71,330,000	71,330,000	71,330,000	71,330,000	71,330,000	71,330,000	71,330,000	213,990,000
095. 3102B	101동	2층	2	261,978,442	362,565,053	36,256,505	660,80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66,080,000	198,240,000
		3층	2	261,978,442	368,746,871	36,874,687	667,600,000	66,760,000	66,760,000	66,760,000	66,760,000	66,760,000	66,760,000	66,760,000	200,280,000
		4층~6층	6	261,978,442	374,837,780	37,483,778	674,300,000	67,430,000	67,430,000	67,430,000	67,430,000	67,430,000	67,430,000	67,430,000	202,290,000

※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의 금액이며, 심사금액에서 일반분양분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임대분양분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2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20%)	잔금(80%)
		계약 시	입주지정일
72A	4,647,000	929,400	3,717,600
84A	5,392,000	1,078,400	4,313,600
84B	6,339,000	1,267,800	5,071,200
95A	6,727,000	1,345,400	5,381,600
95B	4,642,000	928,400	3,713,6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농협	355-0095-2578-13	주택도시보증공사동부PF금융지사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대출알선불가로 각 일정에 맞춰 계좌이체 납부해야 함.

3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남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50%**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72A/84A/84B	70%	30%
전용면적 85㎡ 초과	95A/95B	80%	2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 나)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 나) 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1.)

구 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